

의안  
번호

289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06. 04.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289호

다. 제출일자 : 2024. 05. 23.

라. 회부일자 : 2024. 05. 28.

2.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의회,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근거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강화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아동권리현황조사 신설(안 제6조)
- 나. ombudsman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강화 등 운영체계 정비  
(안 제15조~제18조, 안 제21조)
- 다.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안 제25조~제33조)
- 라.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근거 규정(안 제34조~제42조)
- 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체장 의무 구체화(안 제3조)
- 바. 기타 자구 수정 및 정비(안 제1조~제2조, 안 제8조, 안 제18조~제19조)
- 사. 부칙정비(부칙 안 제1조~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4. 18. ~ 2024. 05. 08.
  - 의 견 : 의견 있음(반영).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내용
입법 예고	아동·청소년의회 용어 대신 어린이·청소년의회 용어 사용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의 명확화	반영	아동·청소년의회 용어를 어린이·청소년의회로 표기 하고,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9호, 제10호)
	아동, 청소년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반영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제2호, 제8호)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반영)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내용
부패 영향 평가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반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23조)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의회 용어를 어린이·청소년의회로 표기하고,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발굴·추진, 재정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등 기존 보다 구체화함.
- 안 제6조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의 참여와 존중 등 아동권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도록 아동권리현황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5조~제23조까지는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옴부즈퍼슨<sup>1)</sup>을 기존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안 제21조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기존 17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확대하고 연 1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로 강화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함.

---

#### 1)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사수하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옹호자로서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 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참여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하도록 아동 참여에 대한 구체적 실행 규정을 명시함.
- 안 제35조~제42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부칙은 조례안 제35조~제42조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등 경과조치 규정을 통하여 개정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 그 밖에 개정사항은 어법에 맞게 자구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

##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을 위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피해구제 기능 수행을 위한 ombudsman 확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강화 등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이념을 반영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과 권리를 존중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안 제35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어린이·청소년의회”로 약칭을 두고 있으므로 안 제40조 및 제42조 조문 중 “의회”를 “어린이·청년회의회”로 수정하고,

- 부칙 안 제2조 조문 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 됨.

**<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0조(사무국의 설치) <u>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제42조(의견반영) 구청장은 <u>의회</u>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성북구 의회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u>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u>」는 폐지한다.</p>	<p>제40조(사무국의 설치) <u>어린이·청소년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제42조(의견반영) 구청장은 <u>어린이·청소년의회</u>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성북구 의회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u>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는 폐지한다.</p>